

공정한 특허분쟁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원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Contents

## 1. 【특허심판원 개요】 -3

## 2. 【심판 주요 이슈】

2-1. 심판 처리기간 등 대폭 단축[12개월 → 8.4개월] - 4

2-2.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 - 5

2-3. 구술심리 확대 - 6

2-4. 쟁점심문서 활성화 - 7

2-5. 심판부별 사례연구 - 8

2-6. 심판사건 설명회 등 개정 주요 내용 - 9

2-7. 고객맞춤형 심판처리 - 10

2-8.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12

2-9. 기업, 변리사 정책간담회 등 국내 소통 - 13

2-10. 한·유럽 심판 영상 회의 등 국제 협력 - 15

## 3 【심판 일반사항】

3-1. 심판제도 - 17

3-2. 심판 절차 - 19

3-3. 심판주요통계 - 20

특허심판원 방문 - 21

찾아오시는 길/연락처

# 1. 특허심판원 개요

**특허심판원은 1998년 개원한 이래 지식재산전문 심판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설립

특허심판원(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은 특허청 소속기관으로서 종전의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를 병합하여 1998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 조직

개원 당시 특허심판원장 외 심판부 13개(심판장 13명, 심판관 26명) 및 심판행정실로 구성되었으나, 지속적인 인력 확대 및 개편에 따라 2020년 현재 심판부 36개(수석심판장 11명, 심판장 40명, 심판관 56명), 심판정책과 및 송무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능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원 운영에 관한 사무 총괄,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과 동시에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 심판부는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취소, 정정,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정책과는 심판정책수립, 심판방식심사, 심판품질평가, 구술심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송무과는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소송 중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1. 심판처리기간 등 대폭 단축(12개월 → 8.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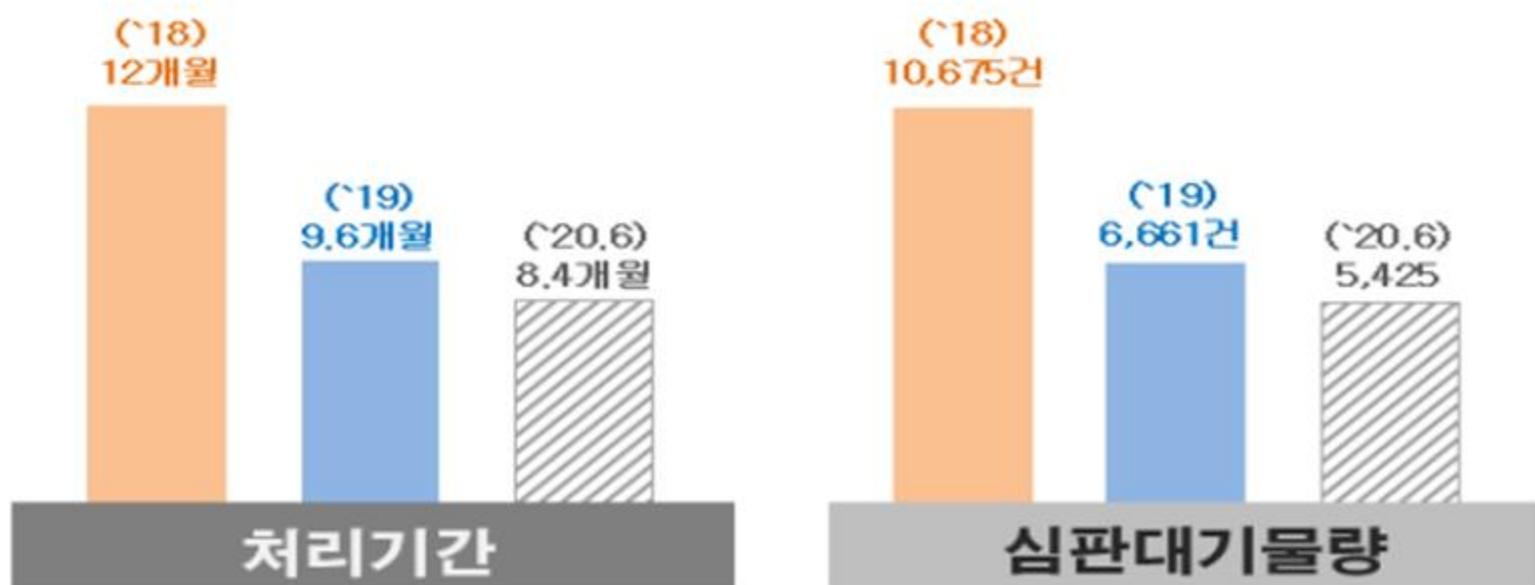
**특허심판원은 직년대비 처리기간 3.6개월, 대기물량을 49% 줄임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신속한 권리 구제

특허심판원은 심판처리기간이 지연되어 신속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심판원 내부의 공감대 하에 '19년 초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였고, 심판관들은 심판처리기간 단축과 대기물량 감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책적으로 심판관 업무에 심판 장기 경력자를 적극 우대하고, 심판정책지원 부서의 인력이 심판관을 도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심판종류별 처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심판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심판관의 노력과 심판처리 효율성 증가로 전년 대비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결과, 심판처리기간은 12개월('18년말) → 8.4개월('20.6월말)로 3.6개월 단축되고, 대기물량도 10,675건('18년말) → 5,425건('20.6월말)으로 49% 감축되었습니다.



## 심판 주요 이슈

# 2-2.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독립성 · 공정성 · 심리충실성 제고를 위한 36개 심판부 확대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3인 합의 충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심판조직의 혁신방안으로 '20년 7월 과장급 심판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98년 특허심판원 개원 이래 심판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심판관 수는 증가하였지만, 규정상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심판장이 소수에 불과하여 심판장 1인이 통솔해야 하는 심판관 수가 많아져, 3인이 합의하는 심리를 보다 충실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장의 자격을 완화하여 심판·소송 경험이 풍부한 과장 중 일부에게 심판장 역할을 부여하고, 심판부를 기존 11개에서 36개로 늘림으로써,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충실하고 공정한 심리 뿐만 아니라, 심판부의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등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 구술심리 확대

**특허심판원은 신속한 심판처리와 정확한 심리를 위해 구술심리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 구술심리 확대를 통한 사실심리 강화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등 제출한 서류로 심리하는 서면 심리와 서류 제출 이후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쟁점에 대해 다투는 구술심리를 모두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용도를 제고하고자 구술심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술심리는 양 당사자가 심리에 직접 참여하여 상대방 또는 심판관에게 실물 제품, 동영상 등을 공개하여 자신의 기술 범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등의 증언 또는 보충설명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심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술심리를 내실화하고자 심판장·심판관을 위한 구술심리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고, 심판관 대상 법률 전문가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구술심리 (2020년 1월)

## 2-4. 쟁점심문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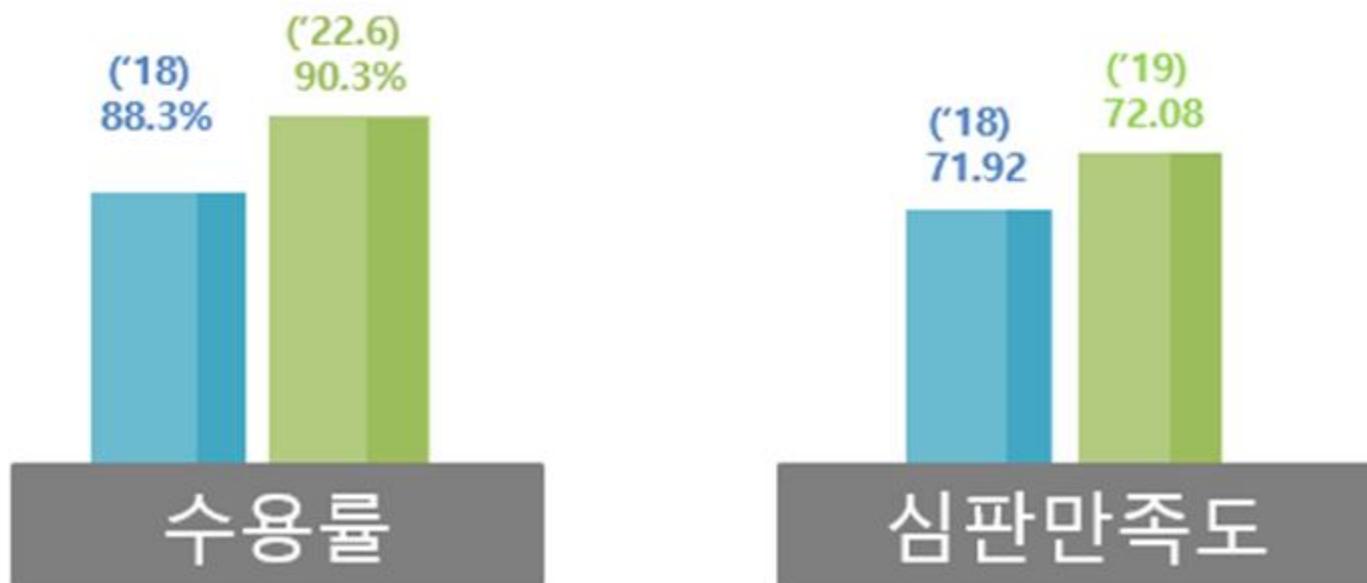
**특허심판원은 구술 심리 전 당사자 양측이 충분히 쟁점을 파악하여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쟁점심문서 통지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 심판 고객의 신뢰제고 및 심판 품질향상

특허심판원은 구술심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술심리 쟁점심문서 통지 절차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이는, 구술심리 전 양 당사자에게 심판관이 미리 정리한 쟁점을 심문서로 송부함으로써, 양 당사자는 구술심리에서 다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구술심리에서 당사자 간 불필요한 진술 반복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심리 충실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위함입니다.

그 밖에도 심리 충실성 등 심판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사자의 심판 결과 수용률과 심판만족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법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2-5. 심판부별 사례연구

**특허심판원은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심판사례 공유 및 과장급 심판장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 연구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연구 교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19년 심판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심판품질 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심판품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판장은 심판부별로 심판 전체 사건을 모니터링 하여 분야별 새로운 쟁점, 고난이도 사건을 발견·선정하여 분석한 후, 관련 내용을 심판부별 사례 교육이나 주요쟁점 토론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심판 연구품질팀을 신설하여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 된 사건의 수집·분석하고 이를 심사·심판관에게 공유 하여 분기별로 심판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 7월 과장급 심판장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11개 심판부가 36개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보다 세부 분야의 기술에 대한 쟁점 및 사례 등이 발굴·공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심판의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6. 심판사건 설명회 등 개정 주요내용

**특허심판원은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면담(설명회) 개최시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방문·영상·전화 방식으로 개최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실심리 강화

특허심판원은 양 당사자가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 이후 주요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서명하는 심판 절차를 20년 1월부터 마련하였습니다.

설명회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주된 쟁점사항이 모호한 사건 등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등이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쟁점사항 등을 설명한 후,

구술심리 조서, 속기록과 유사하게 심판사건 설명회에서 주요내용들을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확인 서명함으로써 추후 다툼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참석하는 면담이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심판처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문 면담(설명회)을 방문·영상·전화 방식으로 다양하게 확대 하였으며,

특히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 또는 인터넷 전화기를 통한 그룹콜 방식으로 영상·전화 면담(설명회)가 예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면담(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7. 고객맞춤형 심판 처리

**특허심판원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격 영상 구술심리

특허심판원은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당사자와 대리인이 구술심리에 참가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이 있는 대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고객 불편을 덜어주고자, 2014년 4월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대전)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 영상심판정을 전용망으로 연결하여 원격으로 구술심리가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므로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부터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면담, 설명회 등을 기존 방문방식 외에 영상·전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전 심판정



▲ 서울 심판정

### 3-트랙 고객맞춤형 심판 처리기간 관리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3-트랙(신속심판, 우선심판, 일반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유형을 구분하여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하고,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여 심결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심판은 심판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일반심판에 비해 우선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의미하며, 우선심판 대상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된 심판사건 등이 해당합니다.

신속심판은 우선심판보다 더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 침해소송이 계류 중인 심판사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속심판 표준 절차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구술심리 개최일부터 2주 내에 심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심판 결정 후 3개월 내에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고객맞춤형 심판 처리



#### 신속심판

-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 양 당사자 모두 빠른 처리에 동의한 심판사건
- Start-up 중소기업이 당사자인 심판사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분쟁 중인 심판사건
-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심판사건 등

#### 우선심판

-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 활용을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심판사건
-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된 심판사건 등

## 2-8.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특허심판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적 약자 대상 국선대리인의 심판처리 지원

특허심판원은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심판당사자가 심판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큰 불만으로 작용하며, 때로는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소기업 등에게 지식재산 심판에 관한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게는 심판수수료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시기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 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서류

##### · 신청시기

- 청구인 :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
- 피청구인 : 답변서 제출기일 내

(심판사건 초기에 대리인이 관여하여 효율적 대리 가능)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등록참전유공자
- 등록장애인
- 학생(초,중,고 재학생에 한함)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수행자
- 소기업
-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중인 중소기업
-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9. 국내 소통

**특허심판원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 기업, 변리사 등 소통의 장 마련

특허심판원은 주요심판고객인 기업과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분쟁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2019년 1월에는 변리사를 대상으로 심판분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선대리인 등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자주 범하기 쉬운 오류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 특허심판원-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교류회(2019년 9월)



심판분야 제도 설명회(2019년 1월) ▶



## 특허심판원-특허법원 간담회

2019년 2월 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절차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양 기관 간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특허심판원, 대전지방·고등검찰청,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등 5개 기관은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매년 6회 특허소송실무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심판소송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된 법률적, 기술적 쟁점을 학계와 논의하고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 사회취약계층 지원(봉사활동)

특허심판원은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2-10. 국제 협력

**특허심판원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및 국제 수준의 심판 품질 제고를 위해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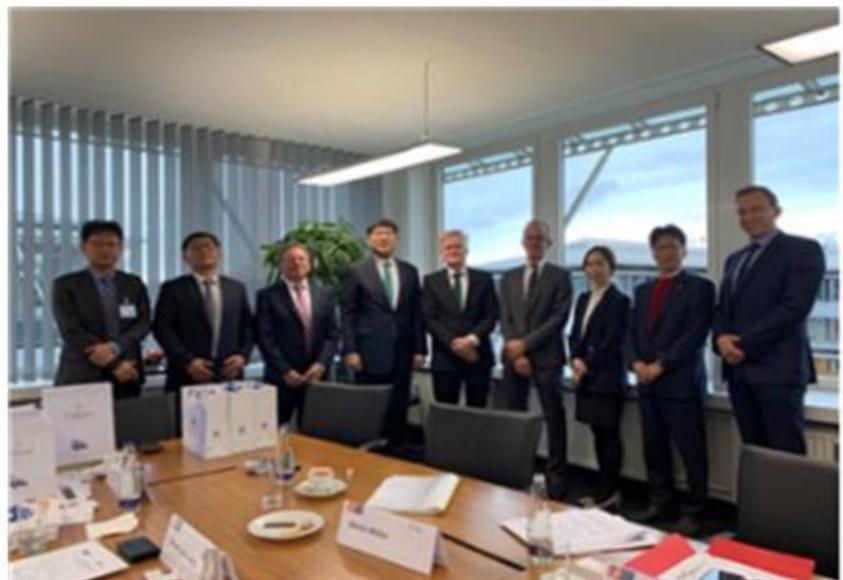
### 한·유럽 심판 국제 협력

2020년 3월에는 유럽(EUIPO) 특허심판원간 심판품질 제고를 위한 비디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양 심판원은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주지·지명상표, 조정·화해제도 주제에 대한 심판 정책을 발표하며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유럽(EPO) 특허심판원을 방문하여 심판분야 양자 협력으로 정례적인 심판관 교류 신설 논의 및 심판 국제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유럽(EUIPO) 특허심판원장  
영상 회의 (2020년 3월)



한·유럽(EPO) 특허심판원장 회의  
(2019년 11월)



## 주요국 특허심판 국제 협력

특허심판원은 2018년 4월 개최된 개원 20주년 기념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 5개국 형태의 심판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6월 서울에서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간 주요 심판정책 발표 및 향후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국내 사용자의 국제 분쟁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허심판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중 심판 국제 협력

2019년 9월 중국에서 「한중 특허 심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심판조직 현황과 주요 심판 통계를 상호교환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심판관련 제도 개선 및 변경 내용에 대해 논의 및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 한일 심판 국제 협력

2019년 8월 일본에서 「한일 심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심판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또한, 심판품질 제고를 위해 한일 주요 심판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3-1. 심판 제도

### 심판 종류

심판 종류는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 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서,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불복하는 심판입니다.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확정된 권리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있으며,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한편 심판과 별도로 2017년 3월부터 특허취소신청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특허취소신청은 결정계 심판 절차를 따릅니다.

심판의 종류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절결정불복심판</li> <li>정정심판(특허, 실용신안)</li> <li>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디자인, 상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효심판</li> <li>권리범위확인심판</li> <li>상표등록취소심판</li> </ul>

\* 기타 : 특허취소신청(특허, 실용신안)

### 주요 심판 상세 설명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

**정정심판** :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상표등록출원에서 출원공고결정등본 송달 전 보정과 디자인등록출원에서 심사단계의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각하 결정된 경우 제기하는 불복 심판

**무효심판**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에 따라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제3자가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인 기술, 상표, 디자인 등이 등록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 : 일단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취소사유에 따라 그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심판(16년 9월 심판청구건부터 취소심판 심결 확정 시,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해서 소멸)

**특허취소신청** : 누구든지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일부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선행기술정보를 기초로 신청하면, 심사관이 특허취소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제도

## 심판관 합의체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심판관 과반수 결정에 의해 합의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 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심판사건의 사무를 총괄하게 합니다.

## 심판관의 심리

심리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며, 구술 또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 또는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를 개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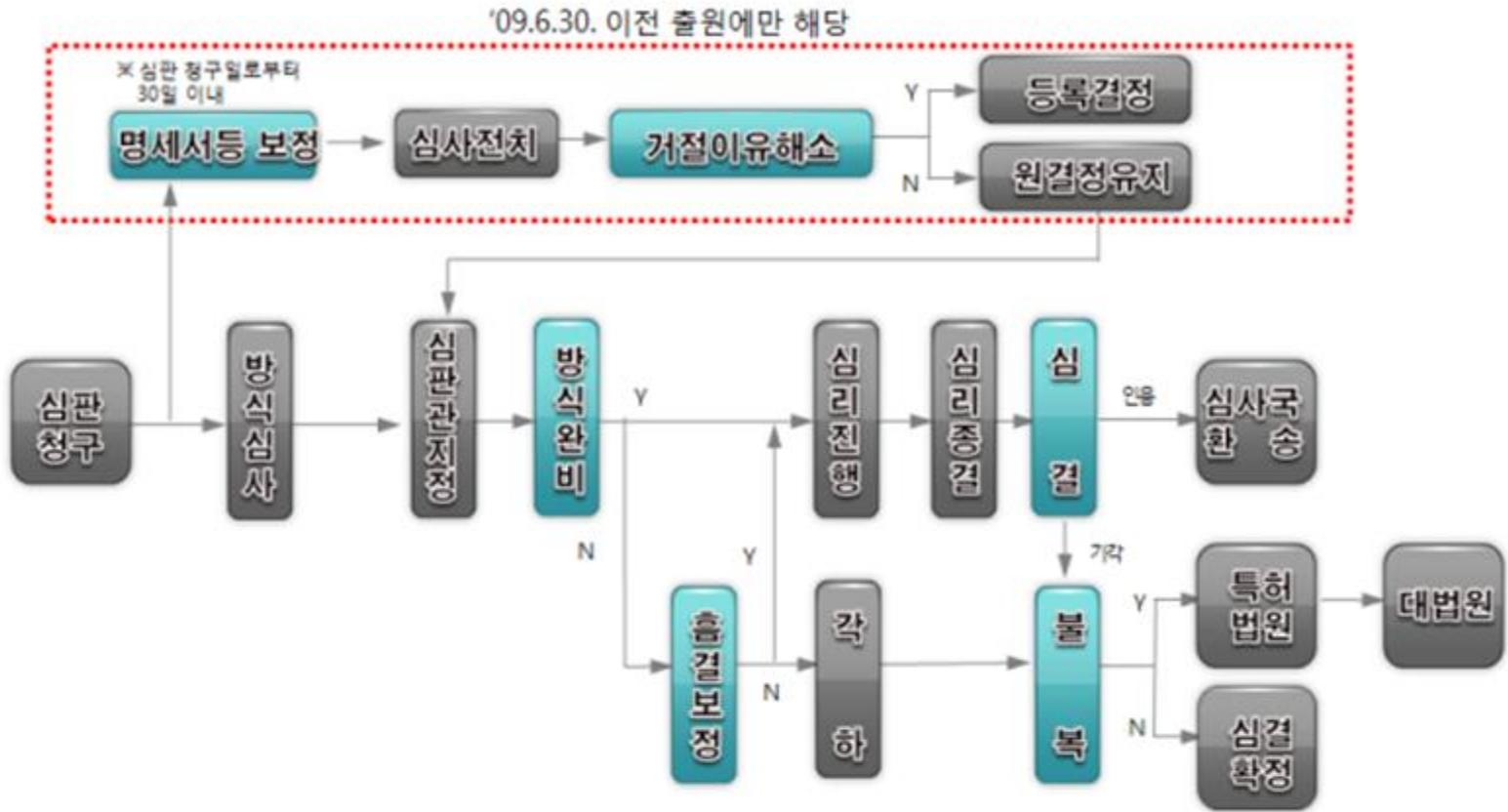
## 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절차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고등법원급 전문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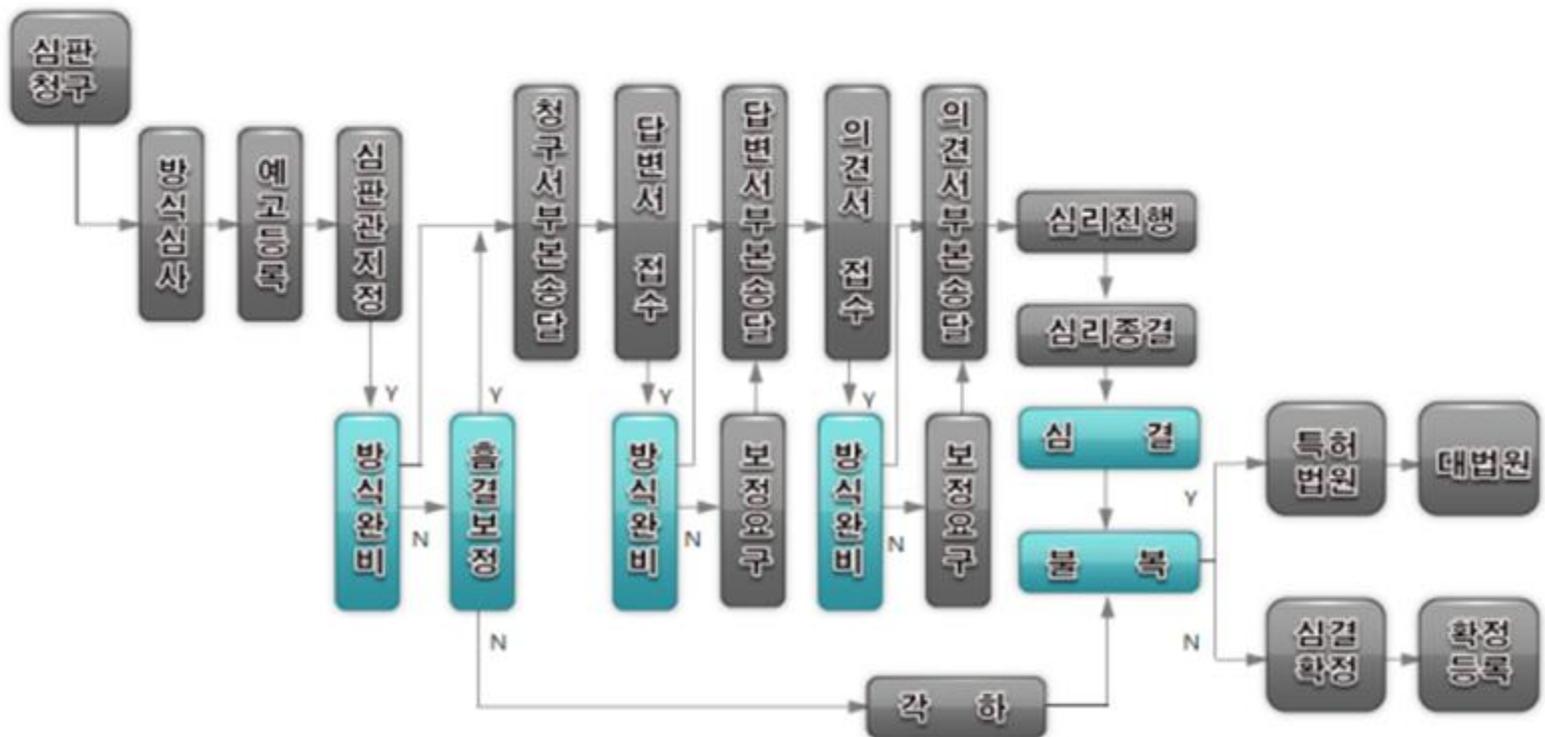


# 3-2. 심판 절차

## 결정계



## 당사자계



### 3-3. 심판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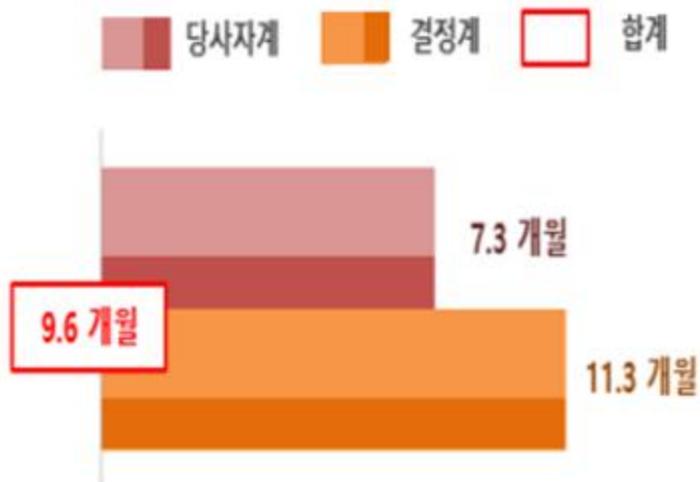
2019년도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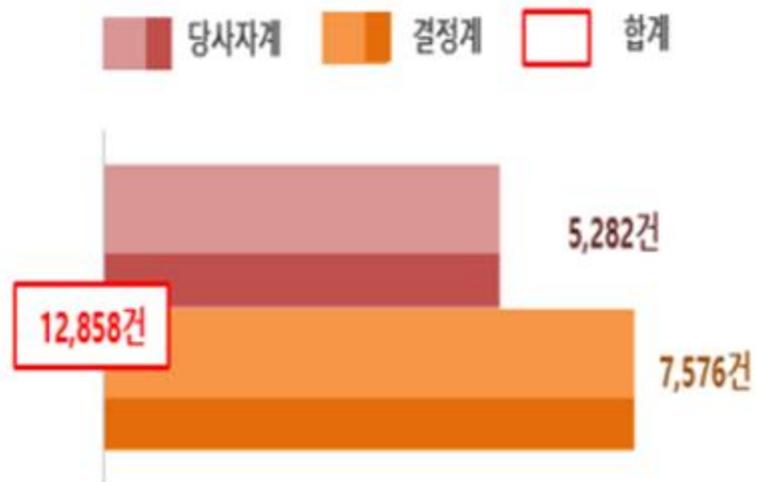
주) 심판처리(종결)은 심판청구 이후 심판관에 의한 심결(인용, 기각, 각하, 취하), 절차무효처분 및 심사관에 의한 심사전치등록결정 건수 등을 포함



2019년도 심판처리기간



2019년 심결건수



## **특허심판원 방문**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에 대하여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 **특허심판원 단체견학 및 구술심리 방청**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심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체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 방청을 원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습니다. 견학 및 구술심리 방청 신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s://www.kipo.go.kr/ipt/>)에서 가능합니다.



◀ 구술심리 방청

### **해외 기관의 특허심판원 방문**

특허심판원은 한국 특허심판원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의 특허심판제도와 영상구술심리시스템 등을 소개하는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특허심사관  
▶ 방문(2019년 3월)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특허심판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디자인 심판부 (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700) 한국교직원공제회 16층

전화 (042)481-8207      팩스 (042)472-3474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ipt/>

### 관련 연락처 및 웹사이트

특허고객상담센터 전화 1544-8080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전화 02-6006-4300

홈페이지 <https://www.pcc.or.kr/>

특허로(전자출원 및 온라인 심판청구) 홈페이지 <https://www.patent.go.kr/>

### 심판서류 제출처(방문, 우편)

특허심판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17층

특허청 서울사무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5층